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율방범대원의 연령 결격사유를 18세 미만으로 완화〉

■ 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202084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부
2. 제 출 일 : 2024. 07. 22.
3. 회 부 일 : 2024. 0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원의 연령 결격사유를 현재 미성년자(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 <u>1.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u> 2. ~ 5. (생략) ② (생략)	제5조(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① ----- -----. <u>1. 18세 미만인 사람 및 피성년후견인</u>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최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피선거권 연령이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고¹⁾,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완화²⁾되는 등 청년의 취업 및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추세임.³⁾

1)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②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3) 「공익법인법」 상 ‘공익법인 임원 활동 연령’(의안번호 제2202145호, 법제사법위원회), 「아이돌봄 지원법」 상 ‘아이돌보미 활동 연령’(의안번호 제2201991호, 여성가족위원회), 「항로표지법」 상 ‘시설항로표지관리원 연령’(의안번호 제2202052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대해서도 제한기준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임.

개정안은 이러한 추세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사람)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함으로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의 청년층이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서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44